

「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 「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」로서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부합하도록 최저거래 금액 및 공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(안 제11조)
 - (당초) 20억 원 이상 → (변경) 10억 원 이상
- 나.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에 관한 사항(안 제27조제2항)
- 다. 도매시장법인의 공시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1조제1항)
- 라. 용어,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1조~제3조, 제5조~제27조, 제29조, 제31조~제34조, 제37조, 제38조, 제42조~제98조, 안 별표 6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규칙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공정거래위원회의 「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의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」¹⁾를 이행하고 도매시장법인 정보 공시 의무 신설, 최저거래금액 및 용어와 띄어쓰기 등 여러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11조에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를 당초 2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한 것은 신규 법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법인이 경쟁하도록 하여 유통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27조제2항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.

현 행	개 정 안
<u>②농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이라함은 매분기별 총거래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</u>	<u>② 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산정 및 검사 주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5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적용한다.</u>

그러나, 제27조제2항의 경우 최저거래금액 산정에 대한 조항이므로 시행규칙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, 조례 제92조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, 제92조제2항에서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음.

1) 공정거래위원회(시장구조개선정책과-1307, 2024.12.12.)에서 “도매시장 법인 지정 시 자본금 요건이 높아 신규 법인 진입 제한, 농수산물 유통의 경쟁 저해 및 소비자 선택권 침해 소지”를 개선 필요 과제로 제시.

그러므로 안 제27조제2항에서는 최저거래금액의 산정기준을
현행과 같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- 관련부서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을 철저히 하여 지역 경제
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임.